분쟁조정 비용 및 예납 기준

1. 분쟁조정비용은 경비, 수당으로 구분한다.

가. 경비

분쟁조정인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예납액은 분쟁조정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3,000,000원으로 하며, 분쟁조정 종결시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21.7.1.>

나. 수당

수당에는 분쟁조정인수당과 판정문작성수당이 있다.

분쟁조정인수당은 신청금액별로 다음(표1)과 같이 회당 3시간을 기준으로 정액지급되며,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표1의 수당 산출근거를 준용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1.7.1.>

[표1] 수당표<개정

2021.7.1.>

신청금액	분쟁조정인수당 (분쟁조정인 1인당)	심리 횟수	산 출 근 거
1억원 이하 또는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2,250,000원	3	25만원 × 3시간 × 3회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000,000원	4	25만원 × 3시간 × 4회
2억원 초과	3,750,000원	5	25만원 × 3시간 × 5회

다만, 심리횟수를 초과하는 심리부터는 매 심리마다 회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한 다. <개정 2021.7.1.>

판정문작성수당은 판정문을 작성하는 분쟁조정인에게만 지급하며, 1억원 이하 또는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500,000원, 신청금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경우 800,000원, 2억원 초과의 경우 1,000,000원을 지급하며, 화해판정문의 경우는

위 금액의 1/2만 지급한다. <개정 2021.7.1.>

2. 분쟁조정비용 예납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국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며 경비, 수당으로 구분한다.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우선 예납하지만, 추후 분쟁조정 판정에서 분쟁조정 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분 쟁조정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승소하면 예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력

개정승인 일자	공고일 (시행일)	관련 규칙개정 위원회	개정내용
2025.7.10.	2025.7.10. (2025.7.11.)	2025년 정기1차	○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의 안정 적 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관한 배전사 업자 정보공유 시점 명시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거래를 위한 규 칙개정(안) - 분산특구 전력거래 관련 정의, 등록, 계통 운영, 입찰·발전계획, 전력거래 제반 사항
2025.4.4.	2025.4.9. (2025.4.10.)	2025년 2차,3차 (긴급)	○ 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 용어변경, 거래유지기간 확대 및 미이행시 제재기준 마련, 용량가격 적용기준 명확화 등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위한 규칙개정(안) - 용어 정의, 의무규정, 전력거래방안 등○ 양수발전기 계획초과 전력량 정산에 관한규칙개정(안) - 양수발전 계획량 초과시 정산규정 개정○ 양수발전기 저주파수 부하차단 정산에관한 규칙개정(안) - 양수 부하차단의 주파수DR 지정 및 주파수DR 서비스 정산금 지급 등
2025.2.10.	2025.2.11. (2025.2.12.)	2024년 6차(통합)	○ 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근거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용어 정의 신설, 수립근거 및 운영기준 명확화 ○ 계통안정화용 ESS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용어 정의, 특성자료 제출규정 및 발전 계획 반영을 위한 제출항목 개정 등 ○ 신뢰성DR 발령기준 변경 및 휴일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발령 예비력 기준 변경, 신뢰성DR 휴일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기준 변경을
			위한 규칙개정(안)
			- 예측오차율 기준을 변경, 예측량 변경
			제출 관련 개정 등 ○ 장주기BESS의 운영기준 마련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 운영기준, 계약양수도 절차 등
			○ 특수일기간 수요예측 의미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2025.1.8.	2024년	- 특수일기간 수요예측 의미 명확화
2025.1.2.	(2025.1.9.)	6차(통합)	○ 수급비상시 예비력 확보를 위한 규칙개정(안)
		,,,,,,,,,,,,,,,,,,,,,,,,,,,,,,,,,,,,,,,	-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 내 조치사항 추
			가
			○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책임 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공급 책임 부여 및 정산금 차등
	2024.12.3.	2024년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 사용
2024.12.2.	(2024.12.4.	2024년 5차(통합)	비율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O/1(0 H)	- 화석연료 사용비율에 혼소 플래그 반영
2024.10.29	2024.10.29	2024년 4차(통합)	○ 중앙계약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중앙계약시장의 대상 물량 명확화, 계약 구조 변경 등 ○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의 하루전 발전계획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의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을 하루전발전계획에 반영 ○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계통현상 분석장치 설치 기준 명시 및
	(2024.10.3	및	설치 범위 구체화
	0.)	5차(통합)	○ 비중앙급전발전기 특성자료 제출에 관한
			규칙개정(안)
			- 기타연료 비중앙급전발전기 특성자료 제출
			을 위한 근거, 서식 마련 O DDC 처문시자 세크게사서 자려 크게 이치.
			○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거래정지 조항
			삭제 등
			○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 신청방법 개선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 월간정산 신청·통지절차 시스템화 등 ○ 정부승인차액계약 시행을 위한 규칙개정(안) - 차액정산을 위한 직접구매자 산정식 신설,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산정식 개정 ○ 신재생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 신설에 관한 규칙개정(안) - 신재생 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 관련 규정 신설 ○ 자가용 전기설비의 총 생산량 계량설비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칙개정(안) - 기존 자가용설비 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기간 12개월 연장
2024.10.8.	2024.10.8. (2024.10.9.)	2024년 4차(통합)	 ○ 하향예비력 계통운영 및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개정(안) - 하향예비력 조치절차/경보발령 기준 - 하향주파수예비력계획량에 따른 가격결 정 ○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제도 관련 규정 신설
2024.8.1.			 ○ 제주 시범사업 최소출력 이하 운전 시가격결정에 대한 규칙개정(안) - 하루전/당일/실시간 발전계획 수립 시출력하한치 적용 가능 - 하루전/실시간 에너지가격 결정 시출력하한치 적용 가능 ○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등록 절차 간소화(전자화) 및 전력구매자의 대금 미지급 시 안정성 확보 ○ 입찰 운영 절차 및 하루전발전계획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발전연료 입찰항목 신설, 휴일입찰기준·비중앙 가용능력·육지-제주 연계선 문구일반화 등 문구 정비 ○ 복합발전기 계통제약보정정산금(AASMWP) 규칙개정(안) - 20~50% 구간(SASMWP) 정산금 지급조건 개정 ○ 복합발전기 GT 정지후 재기동시 기동

			미 호키키키(ACIIAD) 기키키(A)
			비 추가정산(ASUAP) 규칙개정(안)
			- 가스터빈(GT) 정지 후 재기동 시 추가
			기동비 정산조건 개정
			○ 제주지역 운영예비력 확보량 재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
			- 주파수제어예비력, 3차예비력 확보량 변
2024.5.31.	2024.5.31.	2024년	경 및 1차예비력 확보수단 추가
	(2024.6.1.)	긴급2차	○ 제주 시범사업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GT 모드 변동비 반영 조건, 주파수제어
			예비력 정산 기준 명확화 등
			○ 육지 플러스DR 제도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등록기준, 운영기준, 정산기준 신설 등
			○ RPS 고시 개정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
			기능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
	2024.3.28.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2024.3.28.	(2024.3.29.	2024년 1차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개정에
)		따른 비용평가위원회 기능 조정
			○ 석탄발전기 기술특성을 반영한 연간 최대
			기동횟수 신설(안)
			- 기술적특성자료 내 연간최대기동횟수
			신설, 입찰서의 내용 중 제약사유 추가
			○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보완을
		2024년 2차	위한 규칙개정(안)
			- 다조합 비용제도 관련 보완규정, 기술요
			건 충족이 곤란한 재생e 자원에 대한 적용
	2024.2.28.		규정, 재생e 입찰제도 관련 보완규정, 시범
2024 2 28			
2024.2.20.	(2024.2.29.		○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산정
	,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시장은행 정산계좌 신설, 고시 개정에 따른
			판매·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
			산식 개정, 차액계약정신금 단수처리 기준 정정
			○ 제3자간 전력거래의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에 관한 규칙개정(안)
	2024.2.13.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
		 2023년 8차	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2020 1 0/1	전력시장 등록절자, 거래수수료 무과근
			거, 구분 플래그 신설 및 정산일정 변경
			○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등록절차 명확화, 신청기간 변경, 문구 및 양식 변경 등 ○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관련 정의 및 신고 조항 신설, 전력거래 개시요건 명확화, 영업일 기준 적용 등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 시범사업 규칙개정 (안) -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 반영, 보 조서비스 및 급전지시 불이행 규정 신설, 예측제도 경과조치 마련
2023.12.29	2023.12.29 (2023.12.3 0.)	2023년 8차	○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현행 신규 및 탈락자원 신청일정이 이원 화되어 있으나, 이를 시험월 1일(거래일 기준)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토록 일원화 ○ 전력거래 계량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계량설비 봉인 규칙개정(안) - 계량설비 의무 성능시험 준수 및 보안성 강화, 봉인신청·시공 규정 상세화 등 ○ 하한제약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MAP) 지급 판단산식 신설(안) - 기대이익정산금의 정의와 정산금 지급여부 판단산식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현행 판단산식을 구체화
2023.10.31	2023.10.31 (2023.11.1.	2023년 7차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제도 도입 순연을 위한 규칙개정(안)
2023.9.26	2023.9.26. (2023.9.27.)	2023년 5,6차(통합)	 ○ 전력거래대금의 외국환 결제를 위한 규칙개정(안) - 전력거래 대금 결제수단에 외국환 거래 방식 추가 도입 ○ 채무불이행 정산금 산정 및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연체이자 계산방식의 현행 기준으로의 변경 및 관련 절차 마련
			○ 질권설정 및 실행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지급관련 규칙개정(안) - 질권실행 전 질권설정자(발전사)에 거래대금 지급조항 신설 및 실행 통지 후 지급원칙 관련 조항 신설
			○ 고정출력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MAP) 허용오차 변경 규칙개정(안) - 기대이익정산금 지급조건의 허용오차를 현행 기준으로 변경
			 ○ REC 거래시장 참여제한 유예제도 신설(안) - 거래시장 참여제한 사업자 REC 유효기간 만기 도래 및 긴급자금 필요시 제한조치 20일간 유예규정 신설 ○ 규칙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 개정내용관련 연계규정 개정(안) - 양수계획 변경입찰 가능토록 마감시간을변경(16:00 → 17:30) 및 급전지시량 규칙내수식 개정 ○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향예비력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 하향(주파수)예비력 관련 용어 신설, 확보수준에 따른 관리단계 마련 및 급전운영 기준 신설
2023.8.29	2023.8.30. (2023.8.31.)	2023년 4차	 ○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거래에 관한 규칙개정(안) -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거래 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 ○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안) - 실시간시장, 15분 단위 예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신설 ○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따른 DR 규칙개정(안) - 제주 시범사업에 따른 제주DR 정산기준 변경 및 제주 플러스DR 정산금 지급방식 변경

			사항 반영
			 ○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등 채무불이행 조치를 위한 규칙개정(안) -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 채무불이행 대비 보증금계좌 신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자 자율성 및 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 집합전력자원 정의 명확화, 용량감소 발생시 복구기한 변경 및 대상자원 등록기간 선택권 부여(익월 또는 익익월)
	0000 6 00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규정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운전조합 판단규정 명확화 및 개별계량 불기능 발전기의 운전여부 판단을 위한 표시기 신설 등
2023.6.30	2023.6.30. (2023.7.1.)		○ 수요반응자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 불시상황의 감축능력 검증을 위한 감축신뢰성 시험 제도 신설
			 ○ 주파수DR 계량기준 완화 및 시험규정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안) - 주파수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계량기준 완화, 주파수DR 시험규정 신설,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기준 마련 및 참여고객 등록기회 확대(연2회 → 연4회) 등 주파수DR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
			○ 페어발전기 운영계획 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별표9 붙임8-3 페어발전기 운영계획 기준 내 용 명확화(기동시 운영내용 추가)
2023.5.2	2023.5.3. (2023.5.4.)	2023년 2차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 - 긴급정산상한가격 발동시 지급하는 추가정산 금(EAASMWP) 신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
2023.2.27	2023.2.28. (2023.3.1.)	2023년 1차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시스템 보완, 철저한 사전점검, 회원사 시스템 변경 및 검증강화를 위한 모의운영을 위해 도입일정 순연('23.3월 →'23.11월, 8개월 연

			장)
			○ 고정가격계약 전력거래가격 정산상한 기준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안) -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정산상한 가격 반영
			○ 초과급전 공급가능용량 정산식 개선(안) - 초과급전 용량정산금 정산기준 개정
		2022년 4차, 2022년 5차, 2022년 7차	○ 전력거래 정산계좌 등록변경 서류 및 인정기준 규칙개정(안) - 정산계좌 등록·변경 서류 및 전자문서 인정기준 개정
			○ 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범위에 관한 규칙개정(안)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전력거래 대금의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제한
2022 12 22	2022.12.27 2022.12.22 (2022.12.2 8)		○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류 규칙개정(안) -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류 제출기준 개 정
			- 주파수 수요반응자원의 발령기준 확대,
			추가등록기간 신설, 정산기준 등 개정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혼합자원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집합전력자원의 등록, 참여기준, 등록시험 중단기준, 예측오차율 산정 등 개정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한계용량 검토 관련 개정(안)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검토항 목 변경(한계용량→운영전망)	
			○ PFR-ESS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개정(안)
			- PFR-ESS의 참여기준 신설 및 특성자료 제 출기준 개정
			○ 통신회선 규격 규칙개정(안) - 고대역폭 통신회선 사용을 위한 회선

			규격의 대역폭 상한 삭제
			○ 급전전화,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규칙개정(안) - 급전전화 설치기준 및 비상용 대체 통 신수단 설치기준 개정
			 ○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규칙개정(안) - 위성급전전화 구축·운영 및 주파수 임대 주체 변경(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전력거래소) 및 대체 급전전화 통신망 설치 기한 변경
			○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관련 규칙개정(안)-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관련 규정 신설
			○ 공급과잉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최소발전용량이하 운전 규정 개정(안) - 자료제출·관리기준 및 시험절차 신설, 시행기준 개정 등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거래한도 초과 대응을 위한 규칙개정(안) - 자가용설비의 거래한도 준수의무 및 계량기 설치·유지·관리기준 신설
			○ 공정한 수요지원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중소형DR의 통합자원 운영기준 신설, 자발적DR 참여 불가 거래일 개정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비율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직접 전력겨래비율 전력시장 반영
			○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을 위한 정산기준 개정(안) - 직접전력거래 발전기의 정산에 대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반영
			○ 하루전발전계획 및 신뢰도발전계획 수립 관련 규정개정(안) - 발전계획 수립 절차 명확화
2022.12.16	2022.12.22 (2022.12.2 3)	2022년 4차	○ 수요반응자원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국민DR, 표준·중소형DR 뱔령기준 완화

			및 제주지역 신뢰성DR 발령기준 보완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유지기능 증빙자료 제출 규정(안) - 자료 제출의무화 규정 신설
2022.11.30	2022.11.30 (2022.12.1)	2022년 4차, 2022년 5차	○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전력시장 반영 ○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참여자 등록
			- 최소발전용량 용어정의 개정 〇 수요반응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2022.6.29	2022.6.30. (2022.7.1)	2022년 3차	 - 신뢰성DR 발령기준 완화 규정 신설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정보공개등 개정(안) - 발전계획 수립기준/절차 규정화, 발전계획 공개항목 강화, 수요반응자원 피크DR 발령 기준 보완 등
2022.4.29	2022.5.1	2022년 2차	○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개정(안) - 발전시업자와 판매시업자 간 합의를 통한 결제일 조정 규정 신설
2022.5.31	2022.6.1	2022년 1차	○ 제주지역 수요자원시장 분리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제주지역 구분 및 등록기준 개정, DR 프로그램별 제주지역 기준안 신설, 제주DR 별도 보상기준 마련, 플러스DR 당일시장 신설 ○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정신금 관련 규칙개정(안) - 재생돈전기공급사업자 관련 등록기준, 직접PPA 부가정신금 정산기준, 직접PPA 초과발전 및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절차 신설, 직접구매자 적용 기준용량기격 산정기준 개정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용량정산금 산정기준(안) - 실효용량비율 신설, 용량가격표시기 및 시간대별가
			격계수 적용여부 변경(미적용)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 절차 개선(안)
			- RPS 의무이행비용 연간정산시 공급의무자 확인 및 조정신청 절차 도입 및 공급의무자 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관련 제출문서 전자화근거 규정 신설, 관련 법 및 기존 규칙개정에 따른 오류 정정
			○ 지역별(육지 및 제주) 가격결정 시행시기 조정(안)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에 적용된 경과조치 적용대상 중, 지역별 가격결정 관련조항 제외
			○ 연료전환성과계수 개정(안) - 연료전환계수 명칭을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로 변경하고 발전기여도만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 기 준용량 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 기준용량가격 용어정의 명확화 및 시행시점 명시
			○ 판매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시 조치에 대한 규칙개정(안)
			- 판매사업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자격 정지 처분 보류조항 신설
2021 12 22	2021.12.28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발전계획 수립 관련 규칙개정(안)
		2021년 5차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해 정산, 가격결 정 등 관련 규칙조항을 보완하고 규칙 적용시기 수 정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2021.12.23	2021.12.28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직접구매자 자격, 정산금 산정기준 신 설 및 개정
	(2022.1.1.)	2021년 4치	○ 수요반응자원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국민DR 수요반응자원 및 참여고객의 등록주기 단축, 국민DR 및 플러스DR 실적 산정 시 해당 시간 실적이 있는 참여고객의 감축 및 증대랑만 을 반영, 수요반응자원의 발전기여도 산정시 시

			장기준예비율 반영
			○ 석탄발전기 상한제약을 고려한 입찰기준개정(안) - 석탄발전기 미분기 운전대수 관련 보조서비스 특성자료 제출 및 입찰 규정 신설, 비상대기예비 력으로 입찰한 상한제약 석탄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 입찰가능 범위 규정
			○ 계통운영시스템 통신규격 관련 규칙개정(안)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기술규격 공개, 신규통신규격 (TCP/IP) 사용을 위한 통신회선 속도 및 규격추가, 후비 EMS 자료취득용 통신회선 제공위치 변경(중부→경인)
			 ○ 적정 공급예비력 확보 기준 개정(안) - 적정 공급예비력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전력수급 비상발령 예비력 수준, 발전기 동시고장 대응 산 정기준, 전력수요 예측오차 분류 규정 명확화
			○ 열광급발전기의 주파수조정운전 참여규정명확회를 위한 규칙개정(안)- 일정출력 운전시 및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열공 급발전기의 주파수조정운전 참여 의무화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규칙개정(안)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IGCC) 등록기준을 중앙 급전으로 변경하고, 세부 기술요건 및 정산기준, 입찰운영절차 개정
	17 2021.9.18 2021년 3치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지발적DR 규칙개정(안)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 규칙개정('22.1 시행예정)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방식 변경에 맞춰, 수요자원시장에서의 자발적DR 입찰시간(10시 → 14시), 낙찰시간(15시→ 20시) 및 운영방식(분리→통합) 등 변경 	
2021.9.17 2021.9.18 2021년 3차		2021년 3차	○ 전력계통 상정고장 기준관련 규칙개정(안)- 2개 이상의 모선에 동시고장 발생을 다중고장으로 분류하도록 모선 고장유형 구분 명확화
	○ 제주지역 REC 현물시장 거래가격 변환방식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제주지역 REC 정산가격 산정시 현행 '전년도 제주—육지간 평균 SMP 차이' 대신 'REC 생산		

			월의 제주-육지간 SMP 차이'를 반영토록 개정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규칙개정 후 실증 사업 시행결과 도출된 보완내용을 적용하여 발 전기 기준, 예측오차율 산정방식, 등록시험 기준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 발전량 예측제도 규정 전반 보완
			○ 공급용량계수(ICF) 산정기준 개정(안) - 제9차 수급계획의 설비예비율 기준 변경으로 공급용량계수 산정시 적용되는 적정 공급용량 산정기준(최소설비예비율)이 부재하여 전력시장 기준설비예비율을 신설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기대이익정산금 지급기준 개선(안) - 하루전 발전계획 대비 감발한 발전량에 대한 '기 대이익정산금'과 '예비력용량가치정산금'의 이중보 상 문제 해결을 위해 감발한 발전량에 대한 '기대 이익정산금' 중 '예비력용량가치정산금' 해당분은 제외하도록 정산금 산식 변경
			○ 계절별 기동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기 규칙개정(안) - 기동비용 산정 시 사용되는 소내소비전력비에 대한 비용평가규정의 계절구분을 전기요금 기본 공급약관에 맞도록 변경
			○ 양수발전소 용량가격지급률 산정기준 개정(안) - 상부댐 총 저수용량 기준으로 계산되는 현 7.7 시간 기준 정산기준을 9~24시(16시간)로 확대 하는 용량요금 규정개정
2021.6.30	2021.7.1	2021년 2차	위한 「기술평가위원회」개편(안) - '기술평가위원회'를 '계통평가위원회'로 명칭 변
			경 - 검토·합의가 필요한 계통운영 시인에 대한 의결 및 검토 기능 확대 및 상시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 신재생 발전기 계통운영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 신재생발전기 기술적 성능기준 송전연계와 배
			전연계 대상 구분 ○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출력변동 발생 시간대에 대한 비상대기예비력
			입찰기준 명확화 ○ 대기오염물질 저감 상한제약 입찰 규칙개정(안) -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상한 제약 입찰 기간 삭제
			- 대기오염물질 저감 상한제약 입찰 규칙 내 관 런 법조항 이동 반영
			○ 발전기 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규칙개정(안) -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대상 확대 -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거래일로 통보
			 ○ 분쟁조정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 분쟁조정 행정 일수 산정기준 명확화 - 통지·접수기준 변경 및 분쟁비용의 현실화 - 분쟁조정 비공개 원칙 및 일부 분쟁결과에 대한 공개 근거 마련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최소출력이하 저감운전 적용(안) -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에 급전지시 근거 기준 마련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 - RPS 의무이행비용을 전력을 구매하는 자가 구매 량 비율대로 분담하게 하며, 전력구매자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에 대한 재정보증 규정 신설
2021.4.29	2021.5.1	2021년 17	○ 플러스DR 운영일 확대 및 정산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 토요일, 공휴일을 플러스DR 운영일에 포함 - 플러스DR에 참여하는 하나 이상의 발전기 발전량 이 '0'일 경우, 해당시간 수요증대거래량을 발전 량이 아닌 설비용량으로 배분 및 정산
2020.12.1	2020.12.1	2020년 7최	○ 기후·환경제약에 따른 비상대기예비력 *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기준 및 입찰규정 신

			설, 계통운영 절차 개정 - 비상대기예비력기준단가를 비용평가위원회에
			서 결정하도록 함
			 ●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 정산조정계수 연간적용 범위(0<π≤1)내 정산금 조정 규정 신설
			○ 회원사 매출채권 권리관계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별표 8 '정산 및 결제절차'에 질권자의 질 권설정 통지 허용 - 별지의 채권양도/질권설정 통지서 및 정산 계좌 변경신청서 양식 세분화 - 다수의 정산계좌 지정 허용
			○ 정산관련 서류업무 전자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회원사 등록 및 정산관련 서류 제출을 전 자 접수로 진행토록 관련 규정 신설
			○ 우량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전력구매자의 정의, 전력구매자가 일정 조 건 충족 시 재정보증 면제 근거 조항 신설
2020.12.31	2021.1.1	2020년 6차	○ 시운전발전기 급전지시시 미입찰에 대한 정산 신설 - '초기입찰 미참여 시운전발전기에 대한 급 전 지시 발전량 정산금'용어 및 정산기준 신설
			 ○ 전력량계 오차시험 제도개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 오차시험 입회 조항 변경 및 불합격 시 조치 절차 추가 -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 시험주기 수시 시행으로 변경
			 ○ 태양광 전기사업자 최초 전력거래시점 개정(안) -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절차 신설 - 봉인완료 통지서 발급, 비중앙 발전기의 전력 거래 개시일 명확화, 봉인 당일 발전대가

			지급 근거조항 신설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거래 개시 절 차 간소화
			○ 발전소 154kV 변압기 통보휴전절차 관련 규칙개정(안) - 발전소 154kV 변압기 휴전 시 발전기 정비 ·고장 또는 발전기 출력 제한이 없는 경우 급전 전화로 통보 가능하도록 별표 18 '발전기 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개선
			○ 플러스DR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플러스DR 시장 참여방법, 운영기준, 운영시간 및 절차, 등록기준, 정산기준, 정산 일정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현행 가격결정발전계획 폐지 및 실계통여 건 반영 운영발전계획을 통한 전력거래량 낙찰 제도, 계통한계가격 결정 체제 도입 - 현행 에너지 정산체계, 주파수제어서비스 정산 용량 산정기준 개편 - 예비력용량가치 정산금 항목 신설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운전조합별 발전 계획 및 시장가격 산정 방법 개정 및 운전조합별 정산금 산정기준 변경
2020.11.5	2020.11.1	2020년 5차	○ Fast DR (주파수 수요반응자원)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 계통주파수가 59.85Hz이하로 하락시 자동으로 부하를 즉시 감축하는 DR제도 신설
2020.9.24	2020.10.1	2020년 4차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을 예측하여 입찰하고 정확도에 따라 정산받는 제도 신설 ○ 입찰자료 정확도 항상을 위한 입찰규정 개정(안)
			- 전력시장의 발전입찰과 계통의 자료제출

			을 일원화, 발전입찰 분류체계 정비, 입찰 항목 신설 및 변경, 주간전력수급전망용 자 료제출
			○ 국내탄발전기 연료비용 산정방법 개정(안)- 국내탄 발전기 열량단가 산정시 기반기금 차감하여 산정, 조정열량단가 삭제
			○ 연료전지 및 신재생 발전기 관련 규칙개정 (안)
			- 연료전지발전기에 대한 발전설비 출력 감시, 평가 및 제어 규정신설, 제어성능 요구조건 신설, 발전기 특성자료의 제출과 실시간정보의 원격취득 요건마련, 긴급정지 통보규정신설, 발전계획과 정지계획 신설
			○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거래수수료 가상계좌 도입, 거래순서 변경, 부가가치세법 준수방안 마련 등
			○ 보조서비스 정산기준 일부 개정(안) - 예비력 공급량 산정 시 EMS상의 실적 반 영
			○ 수요자원시장 정산 산정식 구체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여러 DR 프로그램에 중복참여 시 정산식 오류개선, 국민DR 활성화 방안 마련
2020.7.7	2020.7.8	2020년 3차	○ 전력거래대금 채무불이행 조치 절차개선 을 위한 규칙개정(안) - 거래소 예비계좌 개설 및 상환기한 연장
			○ 발전기 고장 시 입찰변경, 검토 및 정산절차 개선(안)- 발전기 고장 정지 시 입찰량 산정방안, 계통운영자의 검토절차 및 정산방안 마련
			○ 일간 전력수요예측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입력요소 변경(안)- 가격결정발전계획용 수요예측 시 입력요소변경
			○ 고정출력 제약입찰 발전기에 대한 변경입 찰 기준 명확화

			- 발전량이 변경입찰량보다 작은 경우 공급 가능용량 조정
2020.4.28	2020.4.29	2020년 2차	○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규정 신설 -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규정 신설, 실시간 정보의 제공, 출력 제어, 계통 운영 주체 명시 등 ○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개정(안)
			-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 ○ 예비력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정산수식
2020.4.1	2020.4.8	2020년 1차	= 기계(원) - 「SRSCi,t + RRSCi,t」를 「TRSCi,t + QSRSCi,t」로 변경
2019.12.27	2019.12.31	2019년 6차	○ 제주 비중앙급전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반영방법 개정(안) - 제주도 신재생예측시스템의 발전량 예측값을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시 제주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량으로 적용 ○ 복합발전기 입찰기준 및 가격결정발전계획반영방법 개정(안) - 복합발전기에 대한 GT 및 CC 입찰기준 명확화, ST 부분정지 발생 시 GT모드로 입찰규정마련 - ST 부분정지 시 비정상적인 제약비발전발생방지, CC모드 입찰시간만 가격결정계획에 바열 및 GT모드 있찰시간 제외규정 시

			치여부 확인 규정 마련
			 ○ 비중앙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정보 등록에 관한 규칙개정(안) - 별지 제80호 '발전기 등록신청서'에 연계전 압, 연계변전소, 연계선로 작성 항목 추가
			○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신뢰성DR을 비상시 수급관리용으로 한정,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 신설 - 시장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 위주의 시장제도로 개편 - 수요관리사업자의 감축이행 책임강화 ○ "기술평가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칙개정(안)
			- 기술적 특성자료 심의, 계통운영 관련 사항 검 토 등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설치·운영
			○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의 열량단가 반영 (안)
			- 전력시장 전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규칙 개정
			○ 열공급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열공급발전기 열전비, 효율보정계수의 비용위 산정 근거 마련
	2019.12.13 (2019.12.1 4.)	2019년 4차 및 5차	- 열병합발전기의 열제약량 초과 운전 시 정산 기준을 명확화
			○ 동일 주변압기 병렬연결 발전기의 개별 계량 방안
2019.12.10			- 동일 주변압기 병렬연결 발전기의 개별 계량 절차 신설
			- 사업자에게 계량값 검증 등의 계량데이터 관리의무 부여
			○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해제 시 입찰자료 변경시간 조정(안)
			-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해제 시 거래시간의 15분 전까지 변경입찰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신설

- 양수발전기 정산기준 변경(안)
 - 양수발전기의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 산정 시 발전실적을 반영하도록 가중평균TCF 적용
 - 양수 계획량을 초과한 양수전력량(양수동력)에 대하여 발전시간대 최저MP의 종합효율로 정산
- 공정한 수요반응자원 거래를 위한 규칙개정(안)
- 시장감시 대상 확대
- 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조항 신설
- 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 절차 간소화
- 공급의무자의 거래대금 선 지급 후 등록 의무화
- 공급의무자의 거래대금 지급관련 서류 제출 규정 마련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안)
- 배출권 거래비용 기준가격 산정 기한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예비력 저하 시 신뢰도 운전 전 시운전 발전기 출력 활용 규정 개정(안)
- 시운전발전기의 출력을 실시간 공급능력에 반영하는 근거 규정 마련
- 계량설비 기준 완화 및 현행화
- 신규 전력량계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 마련
- 계량설비 전력량계 요구사항 기준 완화
- 계기용 변성기 공용 요건 미 계량데이터 취득 기준 완화
- 전력량계 인증코드 및 암호 사용 항목 현행화

- 전력량계 요구조건 완화에 따른 계량데이터 관리책임 강화 및 처리방안 추가
- 발전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공급예비력 규정에 관한 규칙개정(안)
-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 시 적정 공급예비력 확보 기준 명확화
- 전력거래대금 정산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산규칙 개정(안)
- 최종정산 통지일을 거래일로부터 22일에서 19일로 3일 단축
- 청구요청 및 청구일을 현행대비 2일 추가 확대
-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용량요금 입찰 및 정산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 구역전기발전기의 잉여용량에 대한 수급 비상 시 급전지시 규정 보완
- 하계 수급전망, 월간, 주간, 하루전 중앙급전 구역전기 가용능력 사전 파악 규정 마련
- 구역 내 수요변화시 구역전기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 변경입찰 규정 신설 등
- REC 현물시장 매매주문가격 제한폭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 매매주문가격 상/하한 범위(30%→10%) 개정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예비력 분류체게 및 수급경보 발령기준 변경 등)
- 예비력 분류체계 변경
- 제주지역 운영예비력 확보기준 신설
- 수급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500MW 상향
- 신뢰도 고시의 운영예비력 변경사항 반영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계통주파수 회복기준, 사이버보안 기준 신설 등)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계통주파수 회복기준, 사이버보안 기준 신설 등 ○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 (발전설비 특성자료 시험 규정 신설) -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을 시각동기 위상 측정 장치에 의한 실적 자료 제출로 대체 허용 -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을 위한 시험, 검증 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 지침 신설
			○ 소규모 전기사용자의 DR시장 참여를 위한 규칙개정(안)
	2019.11.7. (2019.11.8.)	2019년 4차	- 소규모 전기사용자의 DR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등록요건
2019.11.5			- 소규모 전기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 기준 마련
			판매사업자의 과금용 전력량계에서형식승인을 득한 모든 전력량계로 확대
			- 민간 전력량데이터의 수집, 처리, 제공 등의 업무 수행과 전력량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한 민간사업자(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 정의
			○ 발전기 비용평가 자료제출 기준 관련 규칙개정
			- 발전기의 열량단가, 기술특성자료 등의 비용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 기준 변경
2019.5.30	0010 5 01		- PPA발전기 발전비용 평가기준 변경
	2019.5.31. (2019.6.1.)	2019년 3차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 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분쟁신청 접수 거부 및 분쟁조정절차 종료 조항 신설
			-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주체를 '회원'에서 '분쟁당사자'로 수정
			○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

			-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비용을 열량단가에 반영하는 근거 조항 마련
			○ REC 계약시장 전자계약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
			- REC 계약시장의 전자계약서 체결방식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변경
			-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운전 시 연료비 손실 보전 구간을 현행 출력의 50%에서 출력의 80%까지 확대
			○ 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개정
			- 공급용량계수 산정 시 적정공급용량을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최소 설비예비율 13%를 반영
			- 최대부하(예측값) 산정 시 기하평균을 적용 하도록 명시
2019.3.29	2019.4.2. (2019.4.3.)	2019년 2차	○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규칙개정 -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에 대하여 비중앙 급전발전기 예외 조항 적용
2019.2.18	2019.2.21 (2019.2.22)	2019년 1차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대상발전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 - 노후석탄발전기의 대기오염배출량이 적을 경우 발전소 내 정지대상 발전기를 조정
2018.12.28	2019.1.2 (2019.1.3)	2018년 5차	○ 구역수요 초과용량 전력시장 입찰 및 용량요금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
2018.12.12	2018.12.12 (2018.12.1 3)	2018년 5차	○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규칙개정

- 제도 미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 전력거래대금 결제업무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
- 결제일정 간소화 (6차 → 4차)
- 구매측 입금일과 발전측 지급일 분리

	구 분	개 정				
			쌰	거래기간	결제일	
	거 ㅠ		1	1 ~ 9일	5일	
	결제 일정		2	10 ~ 18일	13일	
			3	19 ~ 27일	23일	
			4	28 ~ 말일	26일	
	입굿/쥐급	• 입금 : 결제일 1영업일전 15시 • 지급 : 결제일 15시				시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

- 계획기간 시작 전 기준연도 자료제출 의무 삭제
- 이행연도 자료제출 기한 삭제 및 제출 대상 자료 수정
- 담당 실무협의회 변경 및 명칭변경
- 배출권 할당대상 발전사업자"의 재정의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

- 소규모전력자원 등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관련 용어 신설
- 중개사업자의 전력거래자 등록, 발전기로서 집합전력자원의 등록, 변경 및 말소 등 신설
- 비중앙급전발전기로서 집합전력자원의 정지 및 휴전계획, 긴급정지 통보 제외 개정
- 감시위원회를 통한 중개시장 감시·제제 업무 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중개시장 포함 개정 집합전력자원의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점검대상 제외 신설 및 개정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및 등록
			관련 중개사업자 신설
			 ○ 규칙개정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 - 안건설명회 명문화 및 의견수렴기간 확대 (10일⇒15일)
			○ 수요자원 거래시장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 수요관리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 및 참여고객의 필수정보를 전력거래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명시
			- CBL산정시 유사일 산정을 위한 참고일 개수가 부족할 때, 최대일보다 최소일을 우선 제외하도록 명시
			- 수요자원 등록시 등록용량이 의무 감축용량으로 모두 인정되는 기준을 기존 감축 이행률 90%에서 97%로 변경
			- 추가등록한 수요자원의 경우 감축이행률 70%미만 2회 발생시에도 전력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
			- 초기등록 수요반응자원 중 70%미만 감축 이행률이 2회 발생한 수요반응자원에 포함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은 동일 사업자의 타 수요자원으로 이동불가
			 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과 같이 명백한 비정상 수요 해당일에 가격결정 발전계획 입찰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2018 10 31	2018.11.1 (2018.11.2	2018년 4차	○ 자가용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고 자 하는 참여업체의 안전확보 조항 신설
2010.10.01)	2010 (2. 17.4)	- 독립운전시 관련설비 설치 의무화 (제12.2.3조 제2항 7호 8호 신설)

			-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제출 의무화 (제12.2.3조 제3항 7 호 신설)
			- 전력거래소는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에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및 독립운전 여부를 확인 (제12.2.3조 제4항 신설)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변경
		2018년 3차	- EMS와 자료를 연계하는 RTU 또는 실시 간 자료취득·제어설비와 발전소 제어설비 간에 신호연계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통신 방식을 적용해 직접 연계하도록 명문화 (별표 13 제7.2.1.2호 신설)
			○ 계통보호 업무절차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
	2018.8.2 (2018.8.3)		- 보호방식 검토 의뢰 중 "신형보호장치 도입시"항목은 다른 검토의뢰 요건으로 대체적용 가능하여 삭제(별표16 제7.2.2 호)
			- 보호장치 정정검토 의뢰요건 구체화 (별 표16 제8.2.1호)
2018.7.27			- 정정검토 의뢰요건과 의뢰시기 항목을 구 분 (별표16 제8.2.1호)
20102			- 정정결과 통보절차의 의무규정을 조건규 정으로 변경 (별표16 제8.2.2호)
			○ 정산금 산정관련 시장운영규칙 개정(별표2)
			- 가격계획에 반영된 복합발전기가 GT모 드 운전시 정산기준 개선
			- 자기제약발전 정산금의 산정기준 개선
			- 수력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기준 일부 개선
			○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개정
			-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제2.2.1.1조, 제2.2.1.3조)
			- 비용평가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신설
			(제2.2.3.1조의 2)

			- 차액계약위원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제13.2.1.1조, 제13.2.1.3조)
			- 차액계약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신설
			(제13.2.3.1조의 2)
			-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제9.2.2조)
			-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제9.2.6조의 2)
			- 전력시장 전문가단(Pool) 자격사항에 '법 률분야'반영
			○ 상업운전개시 신고 절차 개정
			- 전기사업자가 계량설비를 봉인하려는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제출 토록 의무화 (본문 제4.1.5조)
	2018.6.14 (2018.6.15)	2018년 2차	○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신뢰성 제고
			-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 현실화 (제5.3.1조)
			- 등록시험의 시행조건 중 감축지속시간 강 화 (제12.3.1.2조)
			- 등록시험 후 참여고객 해지기회 제공 (제12.3.1.8조)
			○ 합리적인 전력거래 조건 개정
2018.6.8			- 추가등록자원의 의무감축시간 단축 및 위약금 산정기준 개정 (제12.4.3.1조, 별표 26)
			- 전력거래기간 변경에 따른 관련 일정 조 정(제12.2.2조, 제12.2.3조, 제12.4.1.1 조)
			- 감축량 산정 정확성 향상을 위한 고객 기준부하 산정기준 개정 (별표 28)
			○ 수요자원 거래시장 문구 수정 및 규칙 명료화
			- 전력거래비율 제한 관련 상위법령(전기사업 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 (제12.2.3조, 제12.2.5조, 제12.2.6조, 제12.5.2.3조 등)

	1		
2018.2.9	2018.2.9 (2018.2.10)	2018년 1차	 수요자원 감축시험 규칙개정 감축시험 부담 완화 및 시험의 실효성 제고 (12.3.2.1조) * 시험횟수: 연간 2회. 단, 시험 및 실적이 저조한 자원은 재시험을 통해 최대 6회 시행 * 감축지속시간: 원칙 1h, 필요시 4h까지 적용 수요자원거래시장 규칙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1.1.2조) * 급전지시 용어정의에 '수요감축요청' 포함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 규칙개정 최대부하 초과 시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 삭제 (5.3.1조) * 전력수급기본계획 ➡ 동하계 전력수급대책 예비력용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 삭제 (5.3.1조)
2017.12.29	2017.12.29 (2017.12.3 0)	2017년 3차	○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 개정 - 실시간 급전지시 미 이행에 대한 기본 위약금 산정식 개정 (별표26) - 실시간 소비전력량 감시기기의 설치 기준 준수 명문화 (제12.2.3조) - 전력시장 감시 대상에 수요관리사업 자 명문화 (제6.3.4조~제6.4.9조) - 감축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고객기준 부하(CBL) 산정기준 변경 (별표 28) - 수요자원거래시장 규칙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제12.2.2조, 제12.2.3조, 제12.3.1.3조 등) - 수요자원거래시장 관련 용어변경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기존 개정 급전지시 수요감축요청 급전지시감축량 수요감축요청량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

- 공급의무자별로 가상의'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별표25)
- 규칙 개정 공고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시험 및 검증을 위한 기간(2개월)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부칙)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 른 규칙개정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한도 예외조항 마련 (제4.1.9조)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변경에 따른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한 조정 (제3.3.1.1조제4항)

○ 채권채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

- 권리변동 통지 형태 일원화 (제4.3.2조, [별표 8] 7.11.6조)
- 권리변동 통지를 위한 표준 양식 신설 (별지 42-1, 42-2, 43-1, 44-1호 서식)
- 정산계좌 설정기준 완화 (제4.3.1조, [별표 8] 5.21, 7.11.4조)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운영프로세스 전산화 에 따른 규칙개정

- 봉인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별표7)
- 전력량계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 거조항 변경 (별표7)
- 계량등록부 서식 변경 (별지 37호 서식)

○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 스 진입용량 완화

- 주파수조정 서비스에 대한 중앙급전 전 기저장장치 진입용량 기준 완화 및 관련 정산기준 신설 (제1.1.2조, 제1.2.4조, 부칙, 별표 2 등)
- 송전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 용어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기 존	개 정
주파수조정용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

○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

- 차액계약운영 실무협의회 운영관련 규칙 개정 (제13.2.3.1조)
- 부생가스발전기 차액계약 기준가격 산정 기준 개정 (별표30)
- 데이터 활용 기준 및 개정사항 적용에 대한 기준 명시 (부칙)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

- 기준용랑가격(RCP) 공개시기 변경 (제2.4.3 조)
- 용량가격계수(RCF)의 공개시기(매년 6월) 를 고려하여 관련 기초자료 공개시기 변 경 (제2.5.5조, 제2.1.1.1조)
- 공급가능용량 정산금 미지급 기준 변경 (제4.2.1.2조)

○ 규칙개정 관련 위원의 임기 및 긴급개정 절차 개정

- 규칙개정 관련 위원임기 규정 개정 (제9.2.2조, 제9.2.6조의 2)
- 긴급개정 요건 및 절차 개정 (제9.3.4조)

○ 예약입찰 시행일정 개정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예약입찰 조정근 거 신설 (별표4)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 및 가 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신설 (별표5, 별 표6)

○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기준 개정

-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 장장치 가용능력의 가격결정발전계획 반 영원칙을 최근 7일 발전실적 평균값으로 변경(별표6)
- 예비력 확보기준 실시간 적용 명확화

			- 예비력을 상시 확보토록 문구를 명확화하되, 불시고장 등 예외에 대한 단서조항마련 (별표3, 별표11) ○ 한국전력 송전망 운영조직 명칭 개정(별표3, 별표12, 별표13) 기존 개정 지역급전소 지역계통운영센터
			지역급전원 지역계통운영원
2017.5.30	2017.5.30 (2017.5.31)	2017년 2차	 ○ 용어정의 개정 및 신설 (제1.1.2조) - 상한제약 용어정의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운전 추가 -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 입찰서 내용 개정 (제2.3.2조) - 입찰서 기재사항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제약운전 발전계획량 추가 ○ 상한제약 입찰 관련 조문 신설 (제2.3.2조의2)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및 기간, 급전지시 예외규정 마련 ○ 30년 경과 노후석탄발전기의 상한제약 입찰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부칙) - 6월 1일(전력거래일 기준)부터 적용 ○ 제약운전 입찰운영절차 개정 (별표 4) - 제약입찰 조건, 제약입찰 코드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추가 - 상한제약량은 공급가능용량과 동일하도록 상한제약 입찰기준 명확화
2017.2.28	2017.2.28 (2017.3.1)	2017년 1차	 ○ 양방향 REC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제11.1.6조, 별표25) ○ 양방향 REC 거래시장의 거래대금 정산·결 제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 (별표25) ○ 계약시장에서 매매체결시 신고기한 개정 (제11.1.7조)

			○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89호, 제90호)
2016.12.30	2016.12.30 (2017.1.1)	2016년 5차	 ○ 중소형DR 제도 신설 및 수요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 개정 및 신설(제5.3.1조, 제12.2.2조, 제12.2.6조, 제12.2.3조, 제12.3.2.1조, 제12.4.3.1조, 별표26, 별표29 등) ○ 중앙급전발전기의 상업운전 개시 신고 시 특성 자료의 변경 의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신설(제18.4조) ○ 안전도제약경제급전 수행 시 상정고장 제약을 포함하도록 변경(제5.2.1조) ○ 주간 시운전발전계획 제출시기 변경(제14.3조)
			력률 적용 제외
2016.10.31	2016.10.31 (2016.11.1)	2016년 4차	○ 기준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기준 변경(제2.4.3 조) - 회계기간 중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기준용량가 격 재산정을 결정한 경우, 재산정일 이후부 터 다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 용량가격계수(RCF) 명칭 변경(규칙전문)

			구 분 한글명칭 영문명칭 (기존 지역별 RCF) 용량가격계수 (Regional Capacity Factor)
		(변경 용량기격계수 (Reserve Capacity Factor)	
			○ 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변경 (제
			2.4.3조, 제2.5.4조 등) - 현 용량가격계수(RCF)를 "공급용량계수(ICF)"
			에 "지역계수(LF)"를 곱하는 것으로 개정
			- 지역계수(LF)는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발전기별로 차등하여 적용
			-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용량TLF) 산정방식 신설
			- 최대부하 발생시점 변경
			- 설비용량 산정기준 변경
			○ 연료전환성과계수(FSF) 신설 (제2.4.3조 등)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기준에 연료전환성 과계수에 관한 조항 신설
			○ 전기저장장치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근
		2016년 1차 2016년 2차	거규정 마련(제1.2.4조의2, 제2.3.1조, 제 2.3.2조, 제4.1.1조, 제5.9.1조, 제10.2.1
	2016.5.12. (2016.5.13.)		조, 제18.2조, 별표2, 3, 6, 8, 9, 11, 13,
2016. 5.12.			15, 17, 18, 19, 별지 7-1, 32-1, 36, 80-1호 서식 등)
			- 일반적인 운영절차는 발전기에 준해서 적용하고, 전력거래 관련 사항은 양수발전기의 관련 규칙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개정 및 신설
			○ 복합발전기 계통제약운전시 정산기준 개선
			(제2.1.1.2조, 별표2, 별표23)
			- 계통제약운전정산금(SCON) 기준개선 및 계통제약운전 중 일부 가스터빈(GT) 재
			기동시 기동비 추가정산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열공급발전기 정산기준 개선(제2.1.1조, 제2.1.1.2조, 별표2) - 열제약운전정산금(GSCON) 및 열제약운 전중 추가 계통제약운전정산금(SCON) 기준개선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신설 (제4.2.1.1조, 별표1, 별표2, 별지 제39호서식 등) -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정산금 통지서, 거래대금 등 청구[요청] 서 개정(별지 제39호, 제39-1호, 제40호, 제40-1호, 제41호, 제41-1호) - 전력거래 정산관련 서식에서 비과세분을 별도 분리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규칙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 발전분야 및 전력수급분야 전문용어 개정 • 감발/증발 ➡ 출력감소/출력증가 • 계통병입/계통병해 ➡ 계통연결/계통분리 • 첨두부하/최대전력/최대수요 ➡ 최대부하
			 ○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통합 관련 개 정(제11.1.6조) - 태양광, 비태양광 현물시장 거래일 및 가 격단위를 통합
			○ 비용자료 제출 방법 변경(제2.1.1.2조) - 비용자료 제출시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 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2015.9.30	2015.9.30. (2015.10.1.)	2015년 4차	 ○ 정보공개규정 변경(제8장, 제6.1.3조, 제11.3.1조 ~ 제11.5.4조) ○ 급전지시 허용오차 기준 변경(별표2 정산기준 I-11-다-3) ○ 수요반응자원 정산금 산정 개선(별표26 I, 제12.2.2조, 제12.2.3조 등) ○ 부생가스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조항 삭

					제(제21.10조, 별표23 등)
				\cap	공급인증서 관련 비용평가위원회 심의
				\cup	의결사항 개정안(제2.2.1.4조 등)
				\cap	대용량 비중앙급전발전기 계통운영 감
				\cup	
					시기능 강화(제5.9.1조, 제5,9.6조, 별표
					9, 17, 18)
				\bigcirc	계통안정화장치 운영방법 개선(제 5.8.5 조, 별표 13 붙임 8.1)
				\bigcirc	계통해석 프로그램 사용기준 변경
					(제1.1.2조, 제5.8.4조, 별표 3, 9, 16,
					18, 21 등)
				\bigcirc	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 조정안
					(별표 2 I 1 가 ②)
				\bigcirc	풍력연계형 전기저장장치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을 위한 계량설비 설치 근
					거 규정 마련(제1.1.2조 제41호, 제
					4.1.1조 제4항)
				\bigcirc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
	2015.5.7	2015년 2:			치 상업운전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2015.4.28	(2015.5.8)		2차		(제2.1.1.1조, 제2.1.1.4조, 제4.2.1.3조,
	(=======,				제5.6.1조, 별표 3, 별표9, 별표11, 별표17
				\bigcirc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
					(제2.1.1.4조, 제2.4.5조, 별표 2.0 등)
				\bigcirc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및 입찰방법 개선(제12.5.2.3조, 제
					12.5.2.4조, 별표 28 등)
	2015.3.17	_		\bigcirc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정에
2015.3.12	(2015.3.18	2015년	1차		따른 규칙개정(부칙(2013.2.28.) 제2조)
)			\bigcirc	예방정비 일정조정에 대한 정산기준 변
					경(별표2 정산기준 I.10)
				\bigcirc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일정 조정(별표
					18)
				\bigcirc	휴전업무절차 간소화
					(제5.9.1조, 제5.9.2조, 별표 18 등)
2014.12.31	2014.12.31	2014년	5 え ト	\bigcirc	정부승인차액계약 규정 신설
2011.12.01	(2015.1.1)	2014년 0수[J. 1		(제13장, 별표30 신설 등)
2014.11.3	2014.11.3	2014년	4 えト	\bigcirc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개설
2014.11.0	(2014.11.4		T(,l		(제12장, 별표26,27,28,29 신설 등)

)		○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 산정기준 변경(제2.4.3조 7항 1,2호, 별표2 정산기준 I. 10) ○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변경 (제2.4.3조 4항 1-4호) ○ 자체기동발전기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한 입찰 신설 (제2.3.2조, 별표1, 별표2. 9. 가 4, 별표 4. 7.12) ○ 자기제약발전(GSCON) 정산시 허용오차적용(별표2 I. 1. 가②) ○ 자율제재금 부과기준 변경 (제6.4.6조) ○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계통분리시 석탄저장조 잔여탄 소진을 위한 계통분리지석 단저장조 잔여탄 소진을 위한 계통분리지역 허용(별표 2. 11. 다. 및 별표4. 7.11.6) ○ 계통연결 계통분리시 허용시간 신설(별표 2 1. 가.②, 별표 2. 11. 다. 및 별표 2. 12.)
2014.10.2	2014.10.2 (2014.10.3)	2014년 3차	○ 차세대 전력IT시스템 운영을 위한 규칙 개정 (제5장 제2절, 제3절 제5.3.4조, 제 10장 제2절 제10.2.1조 1항 2호, 제12장 보칙 제12.9조)
2014.9.1	2014.9.1 (2014.9.2)	2014년 2차	 ○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9.2.2조의2) ○ 비용평가위원구성 변경 (2.2.1.1조 및 2.2.3.1조) ○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 규정 신설 (9.2.4조의 2, 별지 98호 및 99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설 일 확대(11.1.6조, 별표 25)
2014.5.14	2014.5.16 (2014.5.17)	2014년 1차	경 (2.3.2조, 별지 31호 및 33호) ○ 통신망 구성 개정(별표 13) ○ 계통운영시스템 운영절차 개정(별표 13)
2013.10.01	2013.10.01 (2013.10.0 2)	2013년 4차	○ 입찰량 초과 발전기에 대한 정산규정 개 선 (별표 1, 별표 2) ○ 회원사 부담 가산세 청구절차 개정

			(4.2.5.7조, 별표 8)○ 대기온도 반영 복합발전기 입찰규정 개선(별표 4)○ 복합발전기 등록기준 변경(1.2.4조)
2013.07.31	2013.07.31 (2013.08.0 1)	긴급개정	○ 지역별로 전력시장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 구분없이 전체 발전기를 기준으로 전력시장가격 산출(2.4.2조)
2013.4.29	2013.4.30 (2013.5.1)	2013년 3차	 ○ 재정보증제도 개선(3.4.2조, 3.4.3조, 3.4.4조) ○ 온도변화를 반영한 복합발전기 공급가능용량 입찰방식 변경(별표4 6.3.2.1, 6.3.6.5) ○ 소관부처명 변경(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2013.2.21	2013.2.28 (2013.3.1)	2013년 1,2차	○ 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2.4.4조, 별표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RPS 의무이행비용 도입(1.1.1조, 제11장, 별표25)
2012.12.31	2012.12.31 (2013.1.1)	2012년 3차	○ 양수발전기 가격결정 기준변경(별표4, 별표 6) ○ 비중앙발전기 가용능력 산정변경(별표6) ○ 비상시 전력시장 운영절차 신설(별표24) ○ 열병합발전기 등록기준 변경(1.2.4조) ○ 전력거래대금 계산서 삭제(별표8) ○ 과다 입찰시 자율제재금 가중 적용(6.4.4조) ○ 고장조사반 명칭 및 구성 변경(5.8.8조) ○ 전력계통 부하모델 변경(별표3) ○ 전력계통시스템 운영절차 변경(별표13) ○ 전력시장시스템 용어정비(별표4,7,22) ○ 중요설비 작업계획서 제출 명시(5.9.1조) ○ 휴전작업시 정전발생 사전통보(별표18) ○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계량기 설치(4.1.9조) 조) ○ 송·배전용 전기설비 용어정비(1.1.2조등) ○ 송·배전 사업자의 자체 휴전범위(별표 18)

2012.12.3	2012.12.3 (2012.12.4)	긴급개정	 ○ 복합발전기 용량요금 정산방법 변경(별표 2) ○ 발전단 입찰 마감시간 변경(2.3.1조) ○ 허용오차 이내 정산규정 변경(별표2) ○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단계 일부 수정 (제5.1.4조, 별표12 중 5.0조 및 7.2.2조) - 준비단계와 관심단계의 조치사항 통합 - 주의단계와 경계단계의 조치사항 통합 - 배전용 변압기 TAP 조정 조치단계 상향 - 직접부하제도와 긴급자율절전을 긴급절전으로 통합 ○ 용어변경(정산조정계수로 변경)
2012.5.31		2012년 2차 2012년 1차	 ● 어변경(성산소성계수로 변경) ○ 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 등 결제관련 규정 (제4.3.2조 및 별표8 중) ○ 소관기관 변경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명칭 등 반영 (전기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개정(2장, 6장~9장 관련 위원회) ○ LNG 부족에 의한 대체연료발전기 우선 가동시 재고 처리규정(별표7, 7.5.3) ○ 열제약발전기 발전가격 산식 및 정산규정 개정(제2.4.2조 및 별표2 중) ○ 신재생발전용 계량기 설치규정 개정(별표7) ○ LNG 초과부가금 정산방법 개정(별표2 중) ○ 양수펌핑 수요반영 가격결정 및 양수발전 기 정산규정 개정(별표2 중) ○ 전력가격 안정 대상발전기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제21.10조 및 별표23 중) ○ 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예상 시 비중 앙급전발전기, 구역전기사업자 가동 조치단계 변경(제5.1.4조)
2011.12.2	2011.12.2 (2011.12.5)	긴급개정	 ○ 용어정의 변경·신설(제1.1.2조 제57~63 호), 이하 조호변경 ○ 변경입찰시 신속 제출(제2.3.3조제2항) ○ 운영발전계획 수립용 자료제출 신설(제

			2.3.8조) ○ 용어변경 - 공급예비력>운영예비력(제3.2.2.3조, 제3.3.1.3조, 제5.1.4조, 별표3중, 별표 10중, 별표11중, 별표12중) - 대기 및 대체예비력>대기·대체예비력
			(제1.1.2조제60호, 제4.2.1.3조, 제5.6.1 조,별표1중, 별표2중, 별표3의1.2.2, 1.3, 1.3.2, 별표11의7.5.3·4 ○ '열간기동대기' 발전기 기동대기비용 정 산기준(별표2의 11,가) ○ 비상시(운영예비력 저하시) 조치방법 강 화(제5.1.4조, 별표12중) ○ 수요예측프로그램 적용 등(별표5중) ○ 예비력 확보기준 강화 (별표3의 1.2.2, 1.2.3, 1.3.1, 1.3.2 등) ○ 경보발령 및 조치, 통보관련 (제5.1.4조 제4항, 별표12 7.2.1.4,
2011.6.30	2011.6.30 (2011.7.1)	2011년1차	7.2.4) ○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 등 재산정시 적용시점 조정(제2.4.3조 제2항 단서 추가) ○ 전력공급예비력 저하시 조치단계 조정및 조문수정(제3.2.2.3조, 제3.3.1.3조, 제5.1.5조,제12.8조, 별표10, 별표12) ○ 전기위원회 사실조사 관련조항 삭제(제6장 5절) ○ 복합발전기 CC입찰 GT운전시 정산기준변경(별표2, I.1.가.②후단 단서추가) ○ GF추종운전시 정산기준 변경(별표2, I.9.가.1).①) ○ 복합발전기 분기별 대표온도 변경(별표4, 7.6.1~7.6.2) ○ 접속설비 불가항력적 고장범위 확대(별표8, 5.24의가) ○ 정부대표 위원 관련 명칭 변경(제2.2.1.1조, 제8.2.1.2조,제8.2.3.1조)
2010.12.2	2010.12.	2010년3	○ 양수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정산방

	28		
7	(2011.1.1)	차	식 개선(별표6 6.3.1.1 신설 등)
2010.11.3	2010.11. 30 (2010.12.1)	2010년2 차	 ○ 회원사 연회비 자동장수 규정 신설 (제1.2.2조 3항, 4항 신설 등) ○ 정산 통지 후 오류 발견시 정산정정 통지 규정 신설(제4.2.5.5조의 2 신설 등) ○ 구역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보증금산출규정 등 개선(제3.4.2조, 제3.4.3조수정 등) ○ 구역전기사업자의 비교계량기 설치기준 개선(별표 7의 7.1.3 신설) ○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 주기 변경(제4.1.3조, 별표7의 7.3.5 수정) ○ 신규발전기 봉인 통보기간 변경 및 발전기 인증코드 부여기준 개선(별표7의 7.5.2 수정 등) ○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제출시기 변경(제2.1.1.1조 3항 수정) ○ 석탄발전기 상향운전 기준 개선(별표9의 7.2.2.2 3항 수정) ○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송전이용요금 결제조항 삭제(제4.3.2조, 제4.3.4조, 별표8의 7.1.4 등 수정, 제4.3.3조, 별표8의 5.17 등 삭제)
2010.06.3	2010.06. 30 (2010.07.1)	2010년1 차	 ○복합화력발전기 계절별 대표온도 설정변경(별표4 7.6.1, 7.6.2 수정) ○국내탄발전소 용어정의 보완(제1.1.2조(용어의 정의) 28의2 신설) ○주파수 추종 서비스 정산기준 보완(별표 2 9.가.1) ①, ② 수정) ○지시출력 미달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조정방법 개선(별표2 I.11.다.3) 수정등)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전력계통 및 전력IT 분야 관련 규칙 개정(제1.1.2조 수정 등)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절차 강화(제1.1.3

2009.12.2	2009.12. 31 (2010.01.1)	2009년2 차	조 수정 등)
		변경(별표20 7.2.1 및 붙임 9.1 수정) ○자율제재금 부과기준 구체화(제6.4.4조 ②항 수정, 제6.4.6조 ①항 신설 등) ○열병합발전기의 열제약에 대한 가격 결 정 개선(제2.4.2조 및 별표6 6.1.1 수 정, 별표6 6.1.1.1, 6.1.2 ③ 및 부칙 신	
2009.06.2	2009.06. 30 (2009.07.1	2009년1 차	설 등) ○발전비용 평가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제2.1. 1.1조 등)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정산기준 개선
)		(별표8 7.11.1.1,별표2 11.가)

	I	I	
			○계량설비 설치기준 개선(별표7 7.5.1, 8.3.
			1)
			○비회원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제
			8.1.3조, 제8.1.9조)
			│ │○소규모 회원사 시장은행이외의 결제 허│
			용(별표8 5.21)
			○2대 변압기 공유계량기 설치기준 개선
			(별표7 제7.1.3조(설치기준)에 제6호 신
			설)
			│ ^{ᆯ)}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변경 │
			(별표7 7.1.6 등, 별표7 8.0)
			○EMS 자료취득 허용오차 세분화(별표13 7.
			3.2.1.1)
			○제주지역 변전소 자료취득경로 이중화(별표1
			3 붙임8.1 등)
			○전력계통 해석 기술자료 제출서식 신설(제5.
			8.5조 제7항, 별지서식 제82~86호)
			○계통검토 항목 및 자료수집 방법 체계화(별
			표3 제4.1-4.4,4.9조)
			○원자력발전기의 급전지시 허용오차 축소 및
			계량값 기준 정산(별표2 I.11.다.3) 등)
			○가격결정발전계획이내 발전량에 대한 정산식
			변경(별표23 5.2.1 수정)
			│ ○변경공급가능용량 산정시 허용오차(ε) 구분 │
			적용(별표2 I.11.다.3))
			○열공급 제약발전기의 입찰자료 변경시기
			개정(제2.3.3조)
	2008.10.		│
2008.10.3	31	2008년2	요금 지급(제4.2.1.2조)
0		2008년2 차	
	(2008.11.1		
	,		설(제4.2.5.5조)
			○발전기 예방정비일정 변경에 따른 정산기준
			및 절차 개선(별표8 7.3.5~7.3.11, 별표2

	1		T 10)
			I.10)
			○전력거래대금 청구 간주조항 신설(별표8
			7.9.3)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제9.2.6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반영
			(제3.2.1.6조 등)
			○계통운영보조서비스 관련 절차 및 기준 변
			경(제2.1.1.1조, 별표2 I.9, 별표19 7.7.2
			등)
			○송변전설비 휴전계획 개선(제5.9.1조~제5.9.3
			조, 별표18 5.10)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전정보 및 자료취득
			근거규정 신설(별표13 8.1, 별표14 8.4)
	2008.4.2		○기저발전기의 상한가격 폐지(제2.1.1.9조, 별표
0000 4 10	2008.4.2	2008년1	2)
2008.4.18		차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신설(제21.10조,
	(2008.5.1)		부칙, 별표23)
			○전력수급 관련 용어 변경(제1.1.2조 등)
			│ │○용량가격계수 및 소내전력률 적용방법 변경│
			(제2.4.3조)
			○직접구매자의 계량설비 설치기준 조정
			(제4.1.1조)
			│ ○"전력수급분야 위기대응매뉴얼"의 경보수준 │
	2007.12.	2007년2	및 조치사항 반영(제5.1.4조)
2007.12.2	27	2007년2 차	○발전연료공급자를 연료부족시 대책 협의체
2007.12.2		기 2007년3	이 추가(제5.5.3조)
4	(2007.12.2	_00,	
	8)	차	○기존('04.2.25.이전) 구역전기사업자 발전기
			중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되어 운영중인 발
			전기에 대하여 중앙급전발전기로 보는 경과
			조치 신설(부칙)
			○전력거래용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주기
			조정(별표7의 7.3.1)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금 사전조정 항목

			신설(별표8의 7.3.4) ○지역급전소 기능정지시 조치절차 신설(별표 12의 5.7, 5.8, 7.6) ○전력거래 회원의 입찰시스템 접속시 인터넷 방식의 접속이 가능토록 내용 보완(별표22 의 7.4.2)
2007.7.23	2007.7.2 3 (2007.7.24)	2007년1 차	○전력거래대금 정산일정 조정(제4.2.5.3조, 제4.2.5.5조, 별표8) - 초기정산 조정신청 기한 : D(전력거래일)+13일 → D+18일 - 조정신청 처리결과 통보일, 분쟁신청을 위한 협의 만료일 : D+18일 → D+21일 - 최종정산 이의신청 기한 : D+30일 → D+60일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일 : D+55일 → D+85일 ○데이터통신 및 원격취득용 전력량계 범위확대(별표7의 8.1 전력량계) - 전력량계 통신 프로토콜의 IEC 및 KS표준 적용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의 등록절차 신설(제1장 제2절) ○'중앙급전발전기'용어 재정의 및 발전기등록기준 신설(제1.1.2조 제1호)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시운전과 상업운전구분 폐지(제1.1.2조 제56호) ○시운전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 절차일원화(제12.3조) ○발전소와 연계된 154kV 변전소 및 변전소운영급전분소를급전전화설치대상 사업장에추가(별표13의 8.3.4) ○급전자동화설비 운영절차 개정을통한 전력계통자료 취득경로 이중화(별표13의

			자금규모에 맞춰 변경(별표2의 V) () '전력계통운영기준' 내에 전력계통 운영상 태 정의 및 관련 세부기준(정상, 경계, 비상 및 복구상태)을 신설(별표3의 17.0) () 고장파급방지시스템의 동작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업무 관련사항의 보강 - 중요계통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2중화 하도록 조항 신설(별표14의 8.1.1) - 시험 종류, 범위, 주기 등에 관한 조항 신
9	2006.11. 29 (2006.11.3 0)	2006년2 차	설(별표14의 5.0) - 통신시스템 신뢰도 확보와 관련된 조항 신설(별표14의 8.0) 등 ○[별표 17] '고장조사 처리절차'의 관련 규정내용의 전면적 보완 - 전력설비에 고장발생 시 보고체계 문구 정리 및 조항 신설(7.0) - 고장조사 협의대상 변경 및 대상 수정(7.2) - 전력설비 정지관련 통계 조항 신설(8.0) - 절차서 조항 및 문구 전면 재조정 등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에 급전통신 기능 정지 시회원이 조치할 내용 추가(별표12)
2006.9.13	2006.9.1 4 (2006.9.15)	2006년1 차	○시장운영시스템 연계운영(제2.3.2조, 제5.2.3 조, 제5.4.1조) - 발전기비용자료 및 입찰자료에 증출력감소율 4개 허용 - '실시간급전계획'에 대한 별도의 절 신설 - '송전손실 및 송전혼잡관리'에 대한 절 신설 - '전력거래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장 신설 등 ○주파수추종(G/F) 및 자동발전제어(AGC)의 정산기준을 실제 제공가능용량 중심으로 개선(별표2의 9.가,나) ○실시간급전운영, 복구체제보강(제5.3.4조, 별표3의 16.1.1.3, 별표11의 7.2.7, 별표12

			의 7.5.1.4 및 7.5.4.1)
			- 급전전화 기준강화, 급전운영 교육대상 확
			대, 조작주체 명확화, 발전소 개폐기 조작
			사항 추가
			- 세부복구계획 제출근거 보강, 분리계통 주
			파수 감시 신설, 기동발전기 기동의무 추가
			○비상시통신설비 및 자료취득기준 보강(별표
			12의 7.4.3.3, 별표13의 7.3.2.1.2 및
			8.1.1.2~4)
			- 제주 EMS 기능정지시 급전지시 방법의
			추가, 제주지역발전기 출력편차 추가
			- 송변전설비 자료취득기준 조정, 제주지역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 자료취득기준 구분
			드
			○복합화력발전기 공급가능용량의 산정기준온
			도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별표4의
			6.3.2.2)
			○전력계통운영기준중 '조속기 정정', '발전기
			의 출력변동 허용치'세부기준 관련 예외사
			항의 명확한 규정(별표3의 13.0 및 14.0)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절차' 내의 '자체기동
			대상 발전기' 삭제(별표19의 붙임8.1)
			○'최대발전용량'의 용어정의 단서(원자력발전
			소는 원자력법을 적용) 추가(제1.2조)
			○정산식에 따른 가격요소별 정산금 산출시
			원미만 단수정리 처리(별표8의 7.1.3)
			○광역정전 방지대책 강화
			- 계통운전원에 대한 교육제도신설 (별표3의
	2006.1.2 6 (2006.1.27		16.0)
2006.1.20		2005년4 차	 정전계통복구대책 보완(별표12의 7.5.1.1
			및 7.5.1.3)
)		- 광역정전 발생후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
			집 및 보고요건 수립 (별표 16의 9.2.3)

			○「전력수요 예측프로그램」 등의 정의·명칭
			보완(별표5의 5.1 및 5.13, 제5.1.11조)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방법 변경
			- 전력거래소가 비중앙급전발전기에 관한 실
			제 발전량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최근 같
			은 요일 실적을 입찰 자료로 활용(별표6
			의 6.1.4.1)
			· · · · · · · · · · · · · · · · · · ·
			- 공중전화선 또는 무선이동통신 사용(별표7
			의 7.1.6, 7.2.1)
			○345kV 이상 차단기 휴전계획기준 변경(별
	2005.10.		표18의 6.2, 8.4.1)
2005.10.7	10	2005년3	- 타 전기설비의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00.10.1	(2005.10.1	차	로 한정하여 연간계획에서 월간 휴전계획
	1)		대상으로 변경
			○입찰마감시간 이후 변경입찰 유예규정 삭제
			(별표4의 11.3)
			- 통상근무시간 이후 변경입찰을 모사전송
			후 익일 입찰마감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
			도록 하던 것을 통상근무시간의 변경입찰
			방법과 동일하게 입찰시스템에 직접 입력
			○시운전양수발전기 양수계획 변경 허용
			(제5.2.2조 제1항, 별표4의 6.3.3.2)
			○발전기 기동횟수 산정방법 개선(별표2. I .4)
			- 파급정지 및 급전지시로 인한 발전기 정지
			후, 즉시 재기동 가능한 발전기가 급전지
	2005.5.3		시로 재기동한 경우 기동시간의 전시간대
2005.5.27	0	2005년2	계량값에 관계없이 기동비용을 받을 수
	(2005.5.31	차	있도록 정산방법 보완 ○스코코런 키보ㅇ그 최그이건 디츠(버포)이
			○수전전력 기본요금 환급일정 단축(별표8의
			제7.7.1.1조) 스코리러 ㅇ그 즈 키버ㅇ그 친그ㅇ 이렇
			- 수전전력 요금 중 기본요금 환급을 위한
			정산금 증빙서류에 대한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전전

			력 기본요금 정산금 환급일정 단축
2005.1.20	2005.1.2 1 (2005.1.22)	2005년1 차	○구역전기사업자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제1.2 조 제1호 등) - 전기사업법의 개정('03.12.30)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중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함에 필요한 관 련규정을 개정·보완
2004.12.2	2004.12. 22 (2004.12.2 3)	2004년5 차	 ○"혼소율" 용어정의 변경(제1.2조 제28호) - 국내탄발전소의 유연탄 혼소에 대한 시장운영규칙 적용기준 마련 ○선로명칭 부여기준 변경(붙임8.2의 4.1) - 송전선로 명칭을 양쪽 발변전소명으로 부여함으로써 계통운영자의 설비조작시 안전성 및 신속성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
2004.11.	2004.11. 30 (2004.12.1)	2004년4 차	○기저기준발전기 정산식 개정(별표2. I.1. 나.3) - 발전기가 정지중인 경우 양(+)의 추가정 산금이 발생하고, 변동비가 BLMP보다 낮은 경우 음(-)의 추가정산금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 이를 보완 ○정산 및 결제 관련 서식 정비(별표8의 5.6 등) - 사업자별로 정산금통지서(6종), 청구서(3종), 청구요청서(2종)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 비효율성 초래 - 정산·결제관련 11개 서식을 통합하여 3개 서식으로 간소화 (별지 제39호 내지 제41호 서식) - 송전요금, 환수금 등 정산항목을 신설·보완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시에도 사용할 수있도록 개정
2004.9.22	2004.9.2 4 (2004.9.25)	2004년3 차	있도록 개성 ○기저기준발전기의 실제 연료비 회수를 위한 정산방법 변경 - 기저한계가격(BLMP)을 안정화시키기 위 하여 실열량단가가 표준열량단가보다 높은 기저발전기를 기저기준발전기로 함

	T		
			(제1.2조 6의 3) - 기저기준발전기에 대하여 실열량단가를 반영함으로써 최소한 자기변동비(연료비)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산방법을 변경(제2.1.1.3조, 별표2. I.1.나) - 기저발전기의 기준용량가격 보정계수를 세분화(제2.1.1.8조, 제10.7조 제1항 제4호, 별표2. I.2)
2004.9.1	2004.9.6 (2004.9.7)	2004년2 차	○최대발전용량 정의변경(제1.2조 21호) - "최대발전용량(MCC, [MW])"의 정의를 주변 압기 고압측을 기준으로 발전기가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시 부하운전시험 검사에 합격한 용량에서 소내전력을 차감한 용량으로 변경함
2004.7.7	2004.7.9 (2004.7.10)	2004년2 차	 ○발전기 병렬운전에 관한 업무절차 개선(제 5.3.6조, 별표21) "병렬운전조작합의서"폐지 "구역전기사업자"를 병렬운전 처리대상에 포함 함렬운전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토록함 ○주5일근무제 시행 대비 입찰운영절차 보완(별표4) 토요일을 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에 입찰할 내용에 대해 예약입찰제를 시행하도록함 ○계량설비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보완(별표 7) 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시험을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직접 실시할 기준 마련 현행 납 봉인방법을 플라스틱 봉인방법으로 변경 ○태풍・호우 등 불가항력으로 발전소 접속설

*** 사 간 정산기준 마련(별표8)** *** **				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한전과 발전회
2004.4.2 2004.4.2 2004년1 2004.4.2 2 2004.4.2 2 2004년1 전기원회가 양수발전기 용량가격지급 물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심의・의질사항에 "양수발 전기별 용량가격지급원"을 추가제2.2.1.4조) 이시운전발전기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휴전작업을 월간휴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있도록 예외조항 신설(별표18, 제6.2조) 이휴전계획의 제출주체를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이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이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면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급 중 기본요급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이계량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사 간 정산기준 마련(별표8)
### 2004.4.2 2 0004년1				○용량가격지급률을 양수발전기별 특성을 반
2004.4.2 2 2004년1 - 비용평가위원회가 양수발전기 용량가격지급 물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양수발전기별 용량가격지급물"을 추가제2.2.1.4조) 이시운전발전기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휴전작업을 월간휴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있도록 예외조항 신설(별표18, 제6.2조) 이휴전계획의 제출주체를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획은 전력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이구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이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이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적용할 수 있도록
2004.4.2 2 2004년1				수정(별표1, 별표2)
2004.4.2 2 2 2004년1 전기별 용량가격지급물"을 추가(제2.2.1.4조) 이 (2004.4.23 *** 이사운전발전기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휴전작업을 월간휴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별표18, 제6.2조) 이휴전계획의 제출주체를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이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이전력가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이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선설 (제4.1.5조, 별표7)				- 비용평가위원회가 앙수발전기 용량가격지급
2004.4.2 2 2004년1 전기별 용량가격지급률"을 추가(제2.2.1.4조) 이 (2004.4.23 차 이사운전발전기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휴전작업을 월간휴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별표18, 제6.2조) 이후전계획의 제출주체를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이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이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급 중 기본요급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이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이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
0 (2004.4.23		2004.4.2		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양수발
의 입을 월간휴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별표18, 제6.2조) ○휴전계획의 제출주체를 송전사업자에서 전 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2004.4.2	2	2004년1	전기별 용량가격지급률"을 추가(제2.2.1.4조)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별표18, 제6.2조) ○휴전계획의 제출주체를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0	(2004.4.23	차	○시운전발전기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휴전작
(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 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기추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 제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별표7) ()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업을 월간휴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별표18, 제6.2조)
의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지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 │○휴전계획의 제출주체를 송전사업자에서 전
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기사업자로 확대하여 발전사업자도 휴전계
2003.11. 10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획을 전력거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고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함(제5.4.2조 내지 제5.4.6조, 별표18)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가지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부칙'
2003.11. 10 2003.11.11 (2003.11.1 2) 2003년3 차 2003.11. 1 2)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가지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2003년3	근거를 명시(제1.3조 제4항)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가지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표8)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전력거래와 관련된 입찰·정산방식 일부변경
2003.11. 1				- 중앙급전발전기 수전전력요금 중 기본요
2003.11. 10 2003.11.11 (2003.11.1 2) 2003년3 차 - 주연료가 2개이상인 발전기에 대한 비용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금 정산시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2003.11. 1 (2003.11.11 (2003.11.1 2) 2003년3 차 2003년3 차 2003년3 차 3 차 2003년3 차 3 차 3 등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 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 (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을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 관련규정 정
2003.11. 1 (2003.11.11 (2003.11.1 2) 2003년3 차 2003년3 차 등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 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 (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비(제2.1.1.1조, 제2.2.1.4조 및 별표2, 별
2003.11. 10 2003.11.1 2003.11.1 2003.11.1 3 차 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 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 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 (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표8)
10 (2003.11.1 참 평가자료 제출과 사용연료 변경시의 사전 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 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 (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2003.11.			
2) 통보에 관한 내용 보완(제2.1.1.2조, 별표 4)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 (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		
○계량설비 봉인과 관련한 안전관리규정 신설 (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2)	·	, – , – , – , – , – , – , – , – , – , –
(제4.1.5조, 별표7)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송전망 설비계획을 계통운영기관에 제출토				
도 이무하/게도오도지)				○동신당 설미계획을 계승군영기관에 제출도 록 의무화(제5.3.5조)
○ 대 크게 8 글 차 기 년(제3 87 ○ 급전자동화설비(EMS) 취득 자료의 정확도				
유지를 위한 기준 보완(별표 13)				

2003.9.9	2003.9.18 (2003.9.19)	2003년2 차	○시운전발전기가 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상업운전이 늦어지는 경우 중앙급전발전기로 취급 - 사전 비용평가 실시 (제10.5조 제2항) - 계통안정을 위한 급전지시 절차(제10.5조, 제9조 및 제10조 신설) -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입찰 및 정산 (제10.5조 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별표 2, 4, 6) ○송전단 기준 급전지시 시행 - 발전단 급전지시를 위한 단서조항 삭제(제5.1.8조) - 경과규정 (부칙) - 송전단 기준 급전지시를 위한 보완 (별표7, 8, 9 개정) ○표기상의 오류 정정(제7.3.1.1조, 제10.5조 제6항, 별표18)
2003.4.3	2003.5.7 (2003.5.8)	2003년1 차	○발전기 출력과 소비열량과의 관계식에서 등 호(=)의 덧셈기호(+) 오기 정정(제2.1.1.1조 제1항) ○근거조항 조항체계 변경에 따라 "제6조"인용을 "제2.1.1.1조" 인용으로 정정(별표 2,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0. 기타 정산, 가. 기동대기 발전기의 정산) ○"발전비용평가위원회"를 "비용평가위원회"로 정정(별표 4의 5.9, 6.2.2.7.1, 6.3.4.2, 6.3.6.3, 별표 6의 6.1.1, 별표 10의 7.1.1.4, 별표 19의 7.8.1) ○"발전비용평가위원회운영규정", "계통운영보조서비스절차서", "실시간급전운영절차서"를 각각 "제2장제2절", "별표 19", "별표 8", "별표 12", "별표 11"로 정정(별표 2,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8. 대체 연료사용 발전기의 정산, 9.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10. 기타 정산, 별표 3의

5.5, 10.3)

- ○정산계좌 입금시간 14:00, 입금확인시간 10:00 를 각각 10:00, 14:00로 정정(별표 8 7.11.2.1, 7.11.3.1)
- ○정보공개위원회 관련 별지 서식에서 "검토" 를 "의결"로 정정(별지 제23호, 제25호, 제 39호, 제49호 서식)
-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 결제 관련 합의 대상을 모두 구분하여 표현(제4.3.2조 제1 항)
-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결제계좌" 및 "정산계 좌" 사용자 구분 명확화(제4.3.6조 제1항 제5호, 제4.3.6조 제2항 도표)
- ○전력거래정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정의 추가(별표 8 5.16, 5.17 신설, 5.21 용어변 경)
- ○시장에서 정산 및 결제되는 거래관련 정산 금액과 각종 수수료 금액의 단수처리 일원 화(별표 8 7.1.5)
- ○거래대금 결제 관련 각종 사용서식 내용 조정(별지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 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제49호 서식)
- ○발전사업자가 긴급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지 즉시 전력거래소에 통보하는 단서의 추가(제5.4.6조 제1항)
- ○불가피할 경우, 정산결과에 대한 조정(이의) 신청을 팩스 등 문서 제출로 대신하는 것을 허용(별표 8, 7.13.1, 7.13.4.1)
 - 장애복구 즉시 인터넷 입력을 하도록 수 정
- ○"별표"를 "별지"로 정정(제9.3.1조 제1항)
- ○실무협의회 의장을 위원회 전력거래소 위원 으로 변경(제9.2.3.1조제2항)

	T		
			○전력거래소와 각 전기사업자간 업무처리 일
			정 명시 등 절차 보완 (별표 16 7.3.1, 별
			丑 16 8.2.1, 8.2.2, 8.2.3, 8.2.5)
			○ "보호방식 적용방안"과 "보호장치 운영기준"을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의 붙임에서
			삭제하고, 각 전기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기준
			제시 방법 명시(별표 16의 6.1, 6.2, 8.1.1)
			○전력시장운영규칙 본문과 별표 16의 용어
			일치 및 문구 부분 변경(별표 16의 7.1,
			7.1.1, 7.1.3, 7.2.1, 7.2.2, 8.1.4, 8.6,
			8.6.1, 11.1, 11.2, 붙임 11.1, 붙임 11.2)
			○정산 및 결제 절차 부분의 시간 및 기한 기술
			에서 근거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문번호를
			삽입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제3.1.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항 삭
			제)
			○재정보증으로부터의 채무불이행을 청구하는 규정
			을 명확하게 문구정비(제3.2.2.9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항 삭
			제)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개정
			- 세부운영기준의 폐지 및 규칙 본문, 별지로
			통합
			- 전기사용자(50,000 kVA이상) 직접구매
			시행에 대비한 계량 및 정산, 결제, 재정
2002.11.	2002.11.15	2002년5	보증 등의 신설 및 변경
14	(2002.11.1	2002년5 차	-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설립 및 시장감시를
17	6)	^ [위한 규정 신설
			-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 변
			경
			- 휴전업무절차의 변경 및 전력거래용 변성
			기 공동사용 조건
			- 차기 전력시장(TWBP) 모의운영 및 전력

거래자 제도 시행근거 신설
- 초기정신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정신청"으로 변경
- 시운전발전기의 상업운전 인정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 용량가격을 시간대별로 차등 지급

전력시장운영규칙/세부운영기준 개정이력

(2002. 11. 14 이전)

개정 근거 및 일자(확정일)	시행일	관련 규칙개정위원회	개정내용
2002년도 제5차 이사회 2002.9.11	2002.9.18	2002년 4차(정기)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의 신설 (3.4.1, 3.4.2, 3.4.3) ○계량절차서 - 비교계량설비설치의무기간 부분수정 (7.1.1) ○발전비용평가위원회원 구성 부문수정 (제10조 제1,2항) ○입찰운영절차서 - 복합 화력기의 최대발전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계절별 대표온도부문수정 (7.6.1, 7.6.2)
2002년도 제4차 이사회 2002.7.22	2002.7.29	2002년 2,3차(임시)	○초기정산에 대한 이의신청을 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용어 변경 ○발전비용평가위원회운영규정 - 발전비용평가위원회 대리참석 허 용 및 절차, 위임장 양식 신설 (제21조 제5항 신설)
산자부장관의 승인 2002.4.23	2002.5.6	2002년 1차(정기)	○전력시장운영규칙 - XEGW (공급가능용량 초과 발전 량 정산금) 정산식에서 용량요금 보상부문 수정(별첨3) - 765 kV 계통의 안정유지기준 및 계통검토시 사고 종류(별첨4)

개정 근거 및 일자(확정일)	시행일	관련 규칙개정위원회	개정내용
산자부장관의 승인 2001.12.19 2001년 제5차 이사회 2001.12.6	2001.12.2	2001년 3차(정기)	 ○전력시장운영규칙 - 발전기 수전전력 기본요금에 대한 정산기준 및 절차 신설 (제6 조 제2,3항, 제7조, 별첨 3, 부칙) - 시운전발전기의 정상거래 인정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제75조 제5,6,7항) -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기준과 절차신설(별첨 3) ○발전비용평가위원회운영규정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른보완(제7조 제20호, 제1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부칙, 별표8-1) ○정산절차서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른보완(7.6.1, 부칙, 붙임 #2, 3) ○계통운영보조서비스절차서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른 보완(7.6.1, 부칙, 붙임 #2, 3)
2001년 제5차 이사회 2001.12.6	2001.12.1	2001년 3차(정기)	 ○입찰운영절차서 - 복합화력발전기의 입찰방법 변경 (6.3.2) - 중앙급전발전기 목록 삭제 (5.9.2) - 불명확, 불필요한 문구정리 (6.2.3, 6.3.1.4, 6.3.5.1, 6.3.5.2, 6.3.6.2) ○계통운영보조서비스절차서 - 자체기종발전기 지정변경 (붙임 및 1)

개정 근거 및 일자(확정일)	시행일	관련 규칙개정위원회	개정내용
2001년 제5차 이사회 2001.12.6	2001.12.13	2001년 3차(정기)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 - 계통복구기준을 공지사항으로 변경 (7.5, 8.0) ○발·변전소주변압기탭정정및유효접지검토절차서 - 1선지락 고장시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을 위한 기준수치 삽입(8.2.1.1) ○계량절차서 - 3,000kW 이하 발전기 통신회선 제공의무면제 (7.1.6, 7.2.1) - 봉인 및 해제 요청방법의 변경(7.5.1) -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용어 통일(7.1.5, 7.2.2, 7.3.1, 8.2)
산자부장관의 승인 2001.10.31	2001.11.15	2001년 1차(정기)	 ○전력시장운영규칙 - 회원간 합의에 의한 정산일자 변경 (제68조) - 고정출력발전에 대한 정산기준 신설 (별첨 1, 3)
2001년 제3차 이사회 2001.9.15	2001.9.22	2001년 2차(임시)	○규칙개정위원회운영규정-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제1, 5, 6, 7, 9, 10조)
2001년 제3차 이사회 2001.9.1 5	2001.9.22	2001년 1차(정기)	 ○발전기정지및휴전업무절차서 - 월간발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7.4.1, 7.4.1.1, 7.5) ○정산절차서 - 판매회원용 정산금 통지서 양식 변경 (붙임 #2, 3) - 급전지시량 산정수식 정정 (붙임 #10의 8.)

규칙의 약칭(略稱)과 내용

약칭	규칙 내용	관련 조항
규칙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
법	전기사업법	제1.1.1조
보조서비스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제1.1.2조
직접구매자	규칙 제3.2.2.1조에서 정한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규칙 제3.2.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제1.1.2조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제1.1.3조
회원	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자	제1.1.3조
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제1.1.3조
전력거래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	제1.2.1조
비용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제2.2.1.1조
마감시간	거래일 전일 오전 11시	제2.3.1조
개별손실계수	직접구매자의 계량기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름으로 해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손실계수	제3.2.1.4조
구매수수료	전력거래소가 직접구매자에게 직접구매자의 전력시장 진입에 따라 수반되는 정산·결제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충당을 위해 전력거래소 정관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	제3.2.2.7조
시장은행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4조
감시위원회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제6.2.1조
전기사업자 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전력거래소, 시장은행 및 중개시장에참여하는 중개사업자 및 전력자원보유자	제6.3.2조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제7.1.2조
분쟁신청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제7.3.1.1조
신분쟁조정인	규칙 제7.3.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정된 분쟁조정인	제7.3.2.4조
정보	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1 의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 영에 관한 정보	제8.1.1조
정보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제8.2.1.1조

약칭	규칙 내용	관련 조항
도매전력시장	수요측과 공급측의 경쟁을 통하여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시장	부칙 제3조
모의도매전력시장	도매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을 위하여 모의로 일정기간 운영하는 도매전력시장	부칙 제3조
안정유지기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한 안정(성) 유지기준	별표3
발전회원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전력거래소 회원과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하지 않고 전력시장 에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별표4
RSC	발전계획시스템	별표9
RSCT	RSC 입출력프로그램	별표9
비중앙급전 대표발전기	비중앙급전발전기들을 가격발전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만든 한 개의 발전기	별표9
전기에너지	순방향(송전)유효전력량, 역방향(수전) 유 효전력량, 지상무효전력량, 진상무효전력 량	별표7
전력계통비상	규칙 제5.1.4조 및 제5.3.6조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고장, 발전기 불시고장 정지 등으로 전력계통 안정 및 전력수급 운영에 심각한 상태가 초래되거나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계통운영설비의 기능상실, 전력계통 Black-out 등이발생	별표12
시스템	규칙 제5.8.2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안정도 분석결과 불안정한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장파급 방지시스템	별표14
변경	발·변전소, 송전선로, 개폐소(개폐탑 포함)의 신설, 증설, 폐지, 휴지 등	별표15
병렬운전발전기	전력계통에 상시 연계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발전기 중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 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다음 각호(별표21의2.1)의 신·증설발전기	별표21
시스템	규칙 제5.8.2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안정도 분석결과 불안정한 계통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고장파급 방지시스템	별표14

규칙 담당부서 및 연락처

2025. 2. 현재

7]	7.]	rlrl H al	rlrl əl	전화번호
장	절	담당부서	담당자	(061-330
제1장 총칙		공통		
112001	1. 발전비용 평가절차	시장운영팀	전성은	8513
제2장 가격결정	2. 비용평가위원회	시장운영팀	전성은	8513
	3.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시장운영팀	김동준	8512
	4. 가격결정	시장운영팀	김동준	8512
	5. 송전손실계수의 산정 및 적용	시장운영팀	전성은	8513
	1. 판매사업자의 전력구매	시장정산팀	권동진	8972
33	2.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시장정산팀	권동진	8972
제3장	3.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시장정산팀	권동진	8972
전력의 거래	4.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시장정산팀	권동진	8972
	5.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	전력신사업팀	장진우	8961
33	1. 계량	시장고객총괄팀	<u> 이정훈</u>	8543
제4장	2. 정산	시장정산팀	안병관	8971
계량과 정산 및 결제	3.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시장정산팀	<u> 권동진</u>	8972
		수급운영팀	박재성	8815
	1. 발전계획	시장운영팀	김동준	8512
	2. 실시간급전계획	수급운영팀	박재성	8815
	3. 급전지시	수급운영팀	박재성	8815
	4. 송전손실 및 송전혼잡 관리	송전운영팀	박재근	8851
2 = -2	5. 발전기 자기제약	수급운영팀	박재성	8815
제5장		수급운영팀	이영귀	8812
전력계통 운영	6. 보조서비스	계통개발팀	이성균	8651
	7. 양수발전기의 양수운영	수급운영팀	박재성	8815
	8. 전력계통 안정운영 및 자료제공	계통보호팀	김용희	8641
	9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수급계획팀	오제근	8614
	10. 계통평가위원회	계통개발팀	윤영진	8653
	11.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신재생혁신팀	김영중	8692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시장감시실	김완수	8351
제7장 분쟁조정		시장감시실	김완수	8351
제8장 정보공개		시장감시실	김경수	8352
제9장 규칙개정		시장규칙팀	조호정	8522
제10장 전력거리]시스템	시장시스템팀	최은숙	8743
제11장 공급인증	증서 거래	신재생시장팀	고새롬	8603
제12장 수요반응	수요자원시장팀	김성규	8421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계약시장팀	한수경	8433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전력신사업팀	손봉식	8962
제15장 저탄소	선도시장팀	김대훈	8453	
제16장 전력시기	실시간시장팀	박상혁	8473	
제17장 수소발전	수소시장팀	박사일	8462	
제18장 준중앙급	계통개발팀	이성균	8651	
제19장 신재생 역	SG기획사업팀	김도형	8951	
제20장 보칙, 투	-칙	공통		

				전화번호
장	절	담당부서	담당자	(061-330
				-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공통		
	2. 정산기준	시장정산팀	안병관	8971
		수급운영팀	김현기	8813
		계통개발팀	이성균	8651
	3. 전력계통 운영 기준	계통기술팀	주원	8622
	0. 년 1 /110 년 0 / 1년	신재생혁신팀	손기원	8691
		제주본부 운영실	손정국	064-741 -1221
	4. 입찰 운영 절차	시장운영팀	김동준	8512
	5. 전력수요 예측 절차	수요예측팀	최석민	8801
	6.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삭제	2021.1.1	.>
	7.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절차	시장고객총괄팀	김재형	8545
	이 기가 미 커리 키트	시장정산팀	안병관	8971
	8. 정산 및 결제 절차	시장정산팀	권동진	8972
	ㅇ 비키케취 스키 미 레트리케리커 코레키티	시장운영팀	김동준	8512
	9.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수급운영팀	박재성	8815
	10. 연료제약발전기 운영 절차	수급계획팀	서보명	8613
	11. 실시간 급전운영 절차	수급운영팀	박재성	8815
	12.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	수급운영팀	김현기	8813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계통시스템팀	권성철	8723
	14.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적용 절차	계통보호팀	고경재	8644
	15. 기기번호 부여 절차	송전운영팀	박재근	8851
별표(1~34)	16. 계통보호 절차	계통보호팀	공병조	8642
	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계통보호팀	김용희	8641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수급계획팀	오제근	8614
	19. 보조서비스 절차	수급운영팀	이영귀	8812
	20. 발변전소 주변압기 탭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절차		김정원	8648
	21. 발전기병렬운전 및 공급방안 업무절차	계통계획팀	이형석	8674
	22. 시장시스템 운영 절차	시장시스템팀	최은숙	8743
	23.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	계약시장팀	박진범	8431
	24.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절차	시장운영팀	김동준	8512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	고새롬	8603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수요자원시장팀	김성규	8421
	27.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절차		김성규	8421
	28. 고객기준부하 산정 기준	수요자원시장팀	김성규	8421
	29.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기소비형태 검증 기준		김성규	8421
	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계약시장팀	한수경	8433
	31.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 지침	신재생혁신팀	서필원	8695
	32.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계통운영 및 관리설차	신재생혁신팀	김의정	8693
	33.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대한 정산기준	실시간시장팀	박상혁	8473
	34.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발전계획 수립절차	실시간시장팀	박상혁	8473
별지서식 및	! 부록	공통		

주) 이 표는 규칙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변	<u> </u> 호를 명시한 것입니다.

규칙 관련 위원회 위원 명단

2025. 2. 현재

위원회 명칭	규칙개정 위원회	정보공개 위원회	비용평가 위원회	계통평가 위원회
위원장	정동희(전력거래소)	양동우(전력거래소)	김성수(한국공학대)	손성용(고려대학교)
당연직위 원	김남혁(산업부) 옥기열(전력거래소)	김남혁(산업부)	김남혁(산업부) 박만근(전력거래소)	박성열(산업부) 이창근(전력거래소) 강부일(전력거래소)
순환직 위 원	오흥복(한국전력) 김광일(중부발전) 김권종(포스코 인터내셔널)	오흥복(한국전력) 심재원(남부발전)	오흥복(한국전력) 이창열(동서발전)	오현진(한국전력) 이경윤(한국전력) 임경규(남부발전)
전문가	노재형(건국대학교) 조홍종(단국대학교) 조영재(법무법인 광장)	배홍기(회계법인 PKF)) 조민현(정부법무공단) 정태호(경기대학교) 위영민(광주대학교)	김남일(에너지경제연구원) 조홍종(단국대학교) 주성관(고려대학교) 조준오(법무법인화우)	허견(연세대학교) 송화창(서울과기대) 허진(이화여대) 김강원(한국에너지공단)
간 사	안병진(전력거래소)	강지훈(전력거래소)	김광철(전력거래소)	최홍석(전력거래소)
관 련 조 항	규칙 제9.2.1조	규칙 제8.2.1.1조	규칙 제2.2.1.1조	규칙 제5.10.1조